#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·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의안 번호 | 201 |
|---|---|

제출년월일 : 2016. 2. .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## 1. 제안이유

가.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수정

나. 상위법에 근거 없는 자연휴양림 입장제한 및 행위제한 사항이 행정자치부의 '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과제'로 선정되어 관련 조례 개정

## 2. 주요내용

가.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수정(안 제1조)

1) 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 제17조 ⇒ 제21조의5

2) 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⇒ 제9조의7

나. 상위법에 근거 없는 입장제한 등 조항 삭제(안 제8조제2항 및 제3항)

- 입장제한 및 행위제한 조항 삭제에 따른 조문 제목 변경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별첨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　　타

1) 입법예고(2015. 12. 7. ~ 2015. 12. 27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2) 부패영향 및 성별영향평가 : 원안동의

평창군 조례 제 호

#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·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·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”를 “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”로 한다.

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8조(입장제한) 휴양림 관리·운영자는 산불방지, 산림병해충 방제 등 휴양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용자의 입장을 금지할 수 있다. 이 경우 휴양림관리·운영자는 가급적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미리 알리고 휴양림 입구에 이용금지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.

② 삭제

③ 삭제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 --- | --- |
|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」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평창군이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| 제1조(목적) ----------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----------. |
| 제8조(입장제한 및 퇴장) ① 휴양림 관리·운영자는 산불방지, 산림병해충 방제 등 휴양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용자의 입장을 금지할 수 있다. 이 경우 휴양림관리·운영자는 가급적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미리 알리고 휴양림 입구에 이용금지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.<br>② 휴양림 현장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휴양림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.<br>1. 감염 방지가 필요한 감염병 환자<br>2.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납부 | 제8조(입장제한) 휴양림 관리·운영자는 산불방지, 산림병해충 방제 등 휴양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용자의 입장을 금지할 수 있다. 이 경우 휴양림관리·운영자는 가급적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미리 알리고 휴양림 입구에 이용금지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.<br>② 삭제<br>③ 삭제 |

| | | |
|---|---|---|
| 를 거부하는 사람<br>3.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<br>4.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<br>5. 혐오 및 유해동물을 동반한 사람<br>6. 그 밖에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<br>③ 휴양림 현장책임자는 이용객이 휴양림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,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자에 대하여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.<br>1. 소란을 피우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<br>2. 쓰레기 등 오물을 지정장소 이외의 곳에 버리는 행위<br>3. 지정장소 이외의 곳에서 불법취사 및 각종 상행위<br>4. 동물의 포획, 식물의 채취 또는 토석채취 등 산림을 무단 전용하는 행위 | | |

| | |
|---|---|
| 5. 휴양시설물을 이전·오손·파괴하는 행위<br>6. 각종 무속행위<br>7. 그 밖에 휴양림의 관리·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 | |

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 1. 비용발생 요인

- 비용발생 요인 없음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 제5항 제2호

## 3. 미첨부 사유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

## 4. 작성자

| | |
|---|---|
| 작성자 | 산림과장 김철환 |
| 연락처 | (033) 330 - 2450 |

# 관 계 법 령

## ❑ 산림문화 · 휴양에 관한 법률

**제2조(정의)**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"산림문화·휴양"이라 함은 산림과 인간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는 총체적 생활양식과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심신의 휴식 및 치유 등을 말한다.

2. "자연휴양림"이라 함은 국민의 정서함양·보건휴양 및 산림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한 산림(휴양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)을 말한다.

**21조의5(자연휴양림등의 이용료 징수)** ① 자연휴양림등의 소유자는 자연휴양림등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입장료,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등(이하 "이용료"라 한다)을 징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의 징수기준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## ❑ 산림문화 ·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

**제9조의7(자연휴양림등의 이용료)** ①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,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등(이하 "이용료"라 한다)은 해당 자연휴양림등의 조성·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.

② 생략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용료의 세부적인 징수기준은 국가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고,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자연휴양림등을 조성한 자가 정한다.